

의안번호	2216162
의 퇴 인	추미애의원
회 답 일	2026.6.4.
추계번호	26D0311

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기금의 설치)	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	의무규정
2	안 제4조 (기금의 재원)	기금은 정부의 출연금,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,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, 제7조에 따른 차입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	의무규정
3	안 제8조 (기금의 용도)	기금은 방위산업체에서의 방위산업시설의 설치·이전·교체·보완 또는 확장,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,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,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,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,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, 방위산업체의 운영,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유지·관리,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희화된 방위산업물자등의 생산전용 설비·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등을 위한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이자차액지원, 채무보증,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·투자 등의 용도로 운용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9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	국방부장관은 국채·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, 금융기관에의 예치,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,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할 수 있음(제2항)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사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재량규정
5	안 제10조 (기금운용심의회 설치)	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3조(기금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조(기금의 재원)	
3	안 제8조(기금의 용도)	
4	안 제9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	
5	안 제10조 (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)	

2. 상세사유

- 제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·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내용으로,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금 출연,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장소요 발생이 예상됨
- 기존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으로 이관되는 경우,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회계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음
 - 다만,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신설에 따라 사업수행 범위를 확대하면서 정부의 출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¹⁾하는 등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1) 안 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7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
-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,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,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, 제7조에 따른 차입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부담금은 방위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%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방위사업청의 「방위산업 실태조사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84개 방위산업체의 영업이익은 3조 5,880억원이며 부담금을 영업이익의 1%로 가정할 경우 부담금 규모는 358억원 수준임

[표 1] 방위산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

(단위: 억원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
매출액	대 기 업	81,946	104,801	108,254	134,750	212,589
	중견기업	59,710	44,537	48,848	53,350	39,604
	중소기업	11,861	9,463	11,198	13,850	15,555
	합 계	153,517	158,801	168,300	201,950	267,748
영업이익	대 기 업	1,929	4,507	6,511	13,313	30,428
	중견기업	3,137	2,408	3,480	4,238	4,519
	중소기업	608	314	526	1,078	933
	합 계	5,674	7,229	10,517	18,629	35,880

자료: 방위사업청

-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 외부 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의 수당 및 회의 부대 비용 등으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금의 신설에 따라 확대될 사업의 범위와 재정 투입 규모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인력의 수와 기본경비, 심의회의 구성 범위와 회의 주기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기금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일반회계 등에서 이관되는 기존 사업의

예산을 제외한 순증액을 산출하여야 함, 다만, 기금 신설로 인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예산 규모 등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
- 수탁기관에 지급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기금사업의 예산 규모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의 수 등을 가정하여 산출되나, 현 시점에서 기금의 예산 규모와 이를 재원으로 실시될 사업의 종류 및 난이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수당 등의 지급액은 외부 위원 수에 수당 단가와 회의 횟수 등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,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